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가단2570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위길복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4.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8가소416253호로 (주)D와의 2015. 10. 13.자 자산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9,672,255원 및 그중 12,633,846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21가소302107호로 E(주)와의 2018. 5. 25.자 자산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 4. 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8,461,841원 및 그중 5,324,316원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 .

나. C의 아버지인 F가 2020. 2. 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상속분 3/13)와 자녀들인 G, H, I, J, C(각 상속분 2/13)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0. 4. 6.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와 피고 사이에, C의 상속분이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4. 6. C이 위 지분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때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위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수익자인 피고 자신에게 있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자신 및 다른 자녀 4명 중 누구도 C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4.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정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별지

1. 서울특별시 은평구 K 대 159㎡

2. 서울특별시 은평구 K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L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1층 72.90㎡

2층 72.90㎡

지층 72.90㎡ 끝.

- 1) 2021. 10. 6. 현재 원리금 합계는 53,173,748원이다.
- 2) 2021. 10. 6. 현재 원리금 합계는 19,322,336원이다.